

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

의안 번호	4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3.

제안자 : 안산시장

□ 제정이유

- 능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안산시 풍도동에 현대식 내연력 발전소를 건설하여
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며
- 풍도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조례제정의 목적

- 풍도지역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설한 자가발전시설을
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(안제1조)

나. 관리 및 운영

- 도서민의 자영능력 함양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 운영위
원회에 위탁 관리 운영 할수도 있다.
- 위탁관리자는 발전소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소장은 운영위원
장의 지시를 받아 발전소 직원 및 시설을 유지 관리 할 책임을 진다. (안제4조)

다. 운영위원회 구성

- 발전소의 관리,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등에 운영위
원회를 둔다.
-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
위원장은 발전소를 둔 지역을 관할하는 풍장이 되며 위원은 발전소를 둔 지역
의 주민 및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 (안제5조)

라. 위원회의 기능

-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보수계획
- 운영요원의 정원 및 채용
-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
- 유류 및 물품 수급계획
- 예산 및 결산
-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(안제6조)

마. 관리 운영 규정

- 농어촌전화축진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발전시설을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(통신산업부훈령 제56조)과 따로 정하여 세부 운영지침에 의하여 관리 운영한다.(안제10조)

바. 보조금

- 시장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법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.
(안제11조)

제정조례안 : 별첨

관련법령 발췌서 : 별첨

- 농어촌 전화축진법 제18조
- 농어촌 전화축진법 시행령

관련사업 계획서 : 별첨

예산수반사항

- 발전소 연간 운영비 : 150,000천원
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입 : 전기요금 외 5,000천원	<input type="checkbox"/> 75% 한전지식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출 : 150,000천원 (결손 145,000천원) ('96 제1회 추경 반영 계획)	<input type="checkbox"/> 25% 시·군·면 운영

*통상산업부 품질과 의함

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풍도지역 도시민의 문화재 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설한 자가발전시설(이하 "발전소"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농어촌진흥기관법에 의하여 국가 및 한전의 지원으로 안산시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도시지역 자가발전시설(별표1)에 적용한다.

제3조(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) 발전소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에 같다.

제4조(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도시민의 자발성과 협동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 운영위원회 또는 한전에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장은 발전소시설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소장은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 및 발전소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진다.

③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약탈 또는 폐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발전소시설의 관리,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발전소를 둔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되며, 위원은 발전소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공무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선발기준은 공정, 세마을 지도자, 기타주민의 신뢰와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인구수를 객관성 있게 감안하여 선출한다.

제6조(운영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보수개선
2. 운영요인의 정원 및 채용

3. 자가반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
4. 유류 및 물품수급계획
5. 예산 및 결산
6.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7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8조 (회의 및 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미처 봐야 한다.

제9조 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10조 (관리운영규정) ① 농어촌진흥화축진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반전시설은 도서자가 반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.

② 도서자가반전시설은 반전소운영위원회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.

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

1.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반전소의 실제 전력공급 등에 관한 사항
3.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11조 (보조금) 시장은 반전소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.

제12조 (지도감독) ① 시장은 반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편의로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①항의 조사 또는 김사건과 개선하여 이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어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도 서 자 가 발 전 시 설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풍 도 반 전 소	안산시 풍도동 산 171 - 1	풍 도 전 지

김 토 의 견 서

- '94. 12. 26 행정구역개편으로 응진군 대부분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기 추진중인 풍도의 자가발전시설을 현대식 대연력발전소 개조 공사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, 시행하는 사업임.
 -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기 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력공급.
 - 농어업의 생산력 증강과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.
 - 풍도지역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설한 자가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시 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지역경제국장·길유선